

# 2024년도 삼육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 제안요청서

## 1 가입대상 및 기간

가. 가입 기간 : 2023. 11. 09. 00:00~2024. 11. 08 24:00까지(1년간)

나. 가입 대상 : 본교 직원 및 교원 (총 478명)

구분	대상	인원(명)			평균연령(세)		비고
		남	여	합계	남	여	
교직원	본인	282	196	478	50	46	인원변동 가능

※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하여 가입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한 변동은 즉시 가입, 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료는 1인 당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후 정산

다. 보장 내역

구분	보장내용	지급금액	비고
재해(상해)사망	재해로 인한 사망 시	1억	
재해(상해)후유장해	재해장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1억	× 지급률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5천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으로 인해 후유 장해 80%이상	5천	
수술비용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시, 1회당	30만원	
암치료특약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시 갑상샘 및 경계성종양 30%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10%	1,600만원 480만원 160만원	
골절진단비	재해를 원인으로 병원에서 골절로 진단 시 지급	20만원	치아과절포함
입원 일당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 양급여” 발생 시 입원일수 1일당 지급(365일 한도)	3만원	
뇌졸중진단	뇌졸중으로 인한 진단 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	1,000만원	
정신질환진단비	질병분류표에의한 진단시지급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등)	10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상해 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보장제외	1,000만원 /10만원	입원 한방,치과 비급여 보장
상해 비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 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 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보장제외	1,000만원 /10만원	입원 한방,치과 비급여 보장

# 위 보장내용은 최소 보장내용이며,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보장조건을 추가 및 증액 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요약내용이며, 모든 보장내용은 감독기관의 기준 및 약관에 따릅니다.

@ 급여 실손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입원 - (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분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table border="1"> <tr> <td>- 항목</td> <td>- 공제금액</td> </tr> <tr> <td>-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 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 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td> <td>- 1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td> </tr> <tr> <td>-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 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td> <td>- 2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td> </tr> </table>	- 항목	-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 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 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 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항목	-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 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 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 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실손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입원 - (입원실료, 제비 용, 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 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 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table border="1"> <tr> <td>- 항목</td> <td>- 공제금액</td> </tr> <tr> <td>-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 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 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td> <td>-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 비의 30% 중 큰 금액</td> </tr> </table>	- 항목	- 공제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 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 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 비의 30% 중 큰 금액
- 항목	- 공제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 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필수의약 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 비의 30% 중 큰 금액				

## 4세대 실손기준을 따름

4) 보험료의 납입: 월납(12분납), 소멸형

5) 기타

가) 우리대학 직원 전체인원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사에서 처리.

## 2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사업자보험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 또는 지점에 한함
- 라. 입찰공고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업체
-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모두 본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및 중복참여는 불가함.
- 바.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시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 및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함
-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공동수급방식 참여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단,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이행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출)
-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 단, 입찰 등록 시 사용 인감 및 신분증 지참 요망.

## 4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가. 제출된 입찰 서류의 효력 : 제출된 입찰 서류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제출한 입찰 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5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 이하 총액(부가세포함)입찰 최저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한다.

## 6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 대학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본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질서 문란 행위자(담합, 소란 등)

##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납품의 위임 또는 양도 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의 거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계산 일수에 60일을 더한 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납품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을 제출해야 한다.

##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심사 후 통과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진행

나. 본 입찰은 본교의 구매업무처리내규에 준용하여 모든 절차가 처리됨.

다. 업체 선정 후, 혹은 계약 이후라도 허위 사실 혹은 담합 사항 발견 시 무효 처리함.

라. 입찰 공고 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의함.

마. 발주처가 제시한 보험 가입 조건과 보험사의 약관 또는 보상급여가 상이할 경우 발주처가 제시한 보험 가입조건을 조건 없이 적용함.

바.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대표사를 지정하여 대표사가 보험계약, 보험료지급, 가입변경자 통보 등 계약자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 등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업무전담자를 지정하고 창구를 일원화함). 공동수급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대표보험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공동수급에 참가한 잔존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함.

담당: 삼육대학교 총무인사팀 이성희  
Tel. 02-3399-3454  
Email. [hyil212@syu.ac.kr](mailto:hyil212@syu.ac.kr)

2023년 10월 17일

삼육대학교총장